

## 대구대학교 서비스디자인연구소- 농업회사법인(주)프레쉬벨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서

제 1조(목적) 본 협약은 대구대학교 서비스디자인연구소와 농업회사법인(주)프레쉬벨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사업 및 연구분야 관련 정보 공유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협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협력사항)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제반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에 초점을 맞춘 가치 통합형 서비스 개발
2. 농촌 지역 기반 문화 자본을 활용한 식품 콘텐츠 개발
3. 실버세대를 위한 헬스케어형 식품 구독 서비스 개발
4.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확장에 따른 브랜드 체계 고도화
5. 6차산업형 혁신 서비스 연구 네트워크 구축

제 3조(세부사항 협의) 상기 사항의 협력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의 규정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양 조직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해약 통보가 없으면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5조(기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9월 1일



소장 유상원

대표 김근화  
  
프레쉬벨  
Freshbell

## 대구대학교 서비스디자인연구소 - (주)인텐시브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서

제 1조(목적) 본 협약은 (주)인텐시브와 대구대학교 서비스디자인연구소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사업 및 연구분야 관련 정보 공유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협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협력사항)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제반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1. 지역의 제품과 서비스 간 가치 통합형 상품개발 협력
2. AI 기반 혁신 서비스 및 제품의 기획 및 사업 기회 발굴
3. 사용자 경험 기반 생활 밀착형 공동 브랜드 상품 개발
4. 상품 디자인 개발 과정의 프로토타이핑 기법 공동 연구
5. 인재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공동 워크샵 및 세미나 추진

제 3조(세부사항 협의) 상기 사항의 협력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의 규정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양 조직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해약 통보가 없으면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5조(기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11월 30일



소장 유상원

대표 이기오  
  
intenxiv